

대구예술대학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 이규정은 정부표창규정, 상훈법 등에 의한 대구예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포상대상자의 공정한 심사 및 결정을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이규정은 본교 공적심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 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 (책임과 권한) ①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위원회 회무총괄
2. 위원회 소집 및 회의진행

②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회의자료 준비
2. 회의록 작성 및 보고

제4조 (위원회 구성) 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장이 지명하는 7인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중 교원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장 부재 시에는 위원 중 직계 상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한다.

제5조 (공적상 심사기준) ① 수상후보자의 공적은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다년간 꾸준히 노력한 직무실적을 중시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자로 한다.

1. 공적내용이 표창 훈격과 방침에 부합되는지 여부
2. 공적의 질적, 양적인 면에서 뚜렷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
3. 표창으로 그 공적이 사회 또는 교육 발전에 미치는 효과
4.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
5. 훈격이 표창자의 신분 및 공적을 비추어 합당한지의 여부
6. 기타사항(근무년수, 근무부서, 근무분야, 연령 등)
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.

1. 징계의결 중이거나 징계처분(불문경고 포함)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2. 근무성적,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갖추지 못한 자
3. 재직 중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원성을 사는 자
4.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수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제6조 (심의절차) ① 총장은 공적심사를 의뢰할 때 심사 대상자의 공적조서 및 공적 조사서(별지 1호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공적심사 요구가 접수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공적심사를 실시한다.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 심의로 가름할 수 있다.

제7조 (추천서류)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공적조사서(별지 제1호 서식)1부

2. 교직원 인사기록카드(사본)1부

3. 기타 공적 증빙자료

제8조 (의결정족수)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
제9조 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과 작성자인 간사가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.

제10조 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본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11조 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공적심사 세부기준(평가서)

성 명			생 년 월 일					
전 공		직 급		근 무 년 수				
구 분	내 용			평 가 점 수				
1	공적내용이 분야 및 방침의 적합여부			A	B	C	D	E
2	공적의 질적인 면			A	B	C	D	E
3	공적의 양적인 면			A	B	C	D	E
4	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			A	B	C	D	E
기타사항								

※“평가점수”란에 ✓ 또는 ○로 표기할 것

※ 평가점수를 합산.평균하여 우수(4점)이상이어야 추천 대상이 될 수 있음

20 년 월 일

심사평가자 :

(인)